



의안번호	제45호
------	------

<p style="text-align: center;">논산시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p>
--

제 출 자	박승용 의원 외 4명
제출연월일	2022. 04. 13.

논산시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45호
----------	------

발의연월일 : 2022. 04. 13.

대표발의자 : 박승용

공동발의자 : 박영자, 차경선,
김진호, 조배식

1. 제안이유

외국인 주민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따른 외국인 주민 자치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여 외국인과 내국인간 문화적·언어적 차이에서 오는 갈등을 최소화하고, 소통을 통한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지원의 범위 확대 (안 제6조제1항제6호)

나. 논산시 외국인 주민 자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참조

「지방자치법」 제28조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조, 제3조

나. 입법예고 : 2022. 04. 13. ~ 04. 17.(5일간)

□ 개정조례안

논산시 조례 제 호

논산시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조제1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외국인 주민의 자녀 보육·교육사업

제12조부터 제18조까지를 제21조부터 제27조로 하고, 제12조부터 제20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논산시 외국인 주민 자치위원회 설치) 시장은 외국인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통하여 외국인 주민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논산시 외국인 주민 자치위원회” (이하 “자치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3조(자치위원회 구성) ① 자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치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총무, 재무를 둘 수 있다.

③ 자치위원회의 위원은 외국인 주민 중에서 한국어 의사소통이 가능한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사임 의사가 있는 경우
2. 사망, 국외 이주, 질병 등으로 위원 활동이 어려운 경우
3.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장기간 회의 불참 등 위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 다른 지역으로 등록 이전한 경우

제16조(위원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자치위원회를 대표하고 자치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은 각국 외국인 주민을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외국인 주민 관련 각종 시책 의견수렴
2. 나라별 모임 구성 및 유지
3. 외국인 관련 정책 홍보 및 외국인 주민 동향 파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외국인 주민 동향 및 의견수렴을 위하여 각국 대표자를 중심으로 모임(자조모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자치위원회 운영) ① 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개최한다.

1. 정기회 : 분기별 1회 개최
2. 임시회 :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간사와 서기) ① 자치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외국인업무 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외국인업무 담당이 된다.

③ 간사와 서기는 자치위원회의 사무처리와 회의록 등을 작성한다.

제19조(실비변상) 시장은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활동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사기진작) 시장은 위원의 임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한 단체상해보험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성 명
입 안 자	논산시의회 의원	박승용 의원 외 4명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지원의 범위)</p> <p>① 외국인 주민에 대한 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5. (생략)</p> <p><신설></p> <p>6.</p> <p>② (생략)</p> <p><신설></p>	<p>제6조(지원의 범위)</p> <p>① ----- -----.</p> <p>1. ~ 5. (현행과 같음)</p> <p>6. <u>외국인 주민의 자녀 보육·교육사업</u></p> <p>7. (현행 제6호와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2조(논산시 외국인 주민 자치위원회 설치) 시장은 외국인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통하여 외국인 주민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u>논산시 외국인 주민 자치위원회</u>” (이하 “<u>자치위원회</u>”라 한다)를 둘 수 있다.</p> <p>제13조(자치위원회 구성) ① 자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자치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총무, 재무를 둘 수 있다.</p> <p>③ 자치위원회의 위원은 외국인 주민 중에서 한국어 의사소통이 가능한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p>

현행	개정안
<신설>	<p>제14조(위원의 임기) <u>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u></p> <p>제15조(위원의 해촉) <u>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위원</u>의 사임 의사가 있는 경우 <u>2. 사망, 국외 이주, 질병 등으로 위원 활동이 어려운 경우</u> <u>3.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u> <u>4. 장기간 회의 불참 등 위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u> <u>5. 다른 지역으로 등록 이전한 경우</u> <p>제16조(위원 등의 직무) ① <u>위원장은 자치위원회를 대표하고 자치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u></p> <p>② <u>위원은 각국 외국인 주민을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외국인 주민 관련 각종 시책의 견수령</u> <u>2. 나라별 모임 구성 및 유지</u> <u>3. 외국인 관련 정책 홍보 및 외국인 주민 동향 파악</u> <u>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

현행	개정안
<신설>	<p><u>③ 시장은 외국인 주민 동향 및 의견 수렴을 위하여 각국 대표자를 중심으로 모임(자조모임)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u></p> <p>제17조(자치위원회 운영) ① 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개최한다.</p> <p>1. 정기회 : 분기별 1회 개최</p> <p>2. 임시회 :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p> <p><u>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u></p> <p>제18조(간사와 서기) ① 자치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p> <p><u>② 간사는 외국인업무 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외국인업무 담당이 된다.</u></p> <p><u>③ 간사와 서기는 자치위원회의 사무처리와 회의록 등을 작성한다.</u></p> <p>제19조(실비변상) 시장은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활동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p> <p>제20조(사기진작) 시장은 위원의 임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한 단체상해보험 등을 지원할 수 있다.</p>

현행	개정안
제12조 ~ 제18조 (생략)	제21조 ~ 제27조(현행 제12조부터 제18조까지와 같음)

1. 비용 발생요인 및 관련 조문

- ◎ 제12조(논산시 외국인주민 자치위원회 설치)
- ◎ 제16조(자치위원장 등의 임무)
- ◎ 제19조(실비변상)

2. 비용 추계 결과

- ◎ 제12조 논산시 외국인주민 자치위원회 개최 시 위원회 수당 발생으로 추계
 - 40,000원 × 30명 × 4회(연) = 4,800,000원/년간
 - 4,800,000원/년간 × 5년 = 24,000,000원
- ◎ 제16조 논산시 외국인주민 자치위원회 임무수행 시 발생으로 추계
 - 8,000원 × 20명 × 13개국 × 12개월(연) = 24,960,000원/년간
 - 24,960,000원/년간 × 5년 = 124,800,000원
- ◎ 제19조 논산시 외국인주민 자치위원회 활동비 등 발생으로 추계
 - 50,000원 × 30명 × 12개월(연) = 18,000,000원/년간
 - 18,000,000원/년간 × 5년 = 90,000,000원

3. 작성자

복지인권과장 김 배 자

〈연도별 비용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계
세	입	26,380	50,260	50,260	50,260	50,260	227,420
지	방 세	26,380	50,260	50,260	50,260	50,260	227,420
세	출	26,380	50,260	50,260	50,260	50,260	227,420
201-01 사무관리비		2,500	2,500	2,500	2,500	2,500	12,500
301-12기타보상금 위원회수당		23,880	47,760	47,760	47,760	47,760	214,920
재 원 조 달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시비)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26,380	50,260	50,260	50,260	50,260	227,420
	지방세	26,380	50,260	50,260	50,260	50,260	227,420
	세외수입						
지 방 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하여 개인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 환경을 만들어 대한민국의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에 노력하여야 한다.